

예 산 총 칙

제 1 조 2011년도 일반회계 및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 · 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총 계	93,585,226	2,807,557
일 반 회 계	34,784,461	1,043,534
특 별 회 계	58,800,765	1,764,023
기타특별회계	58,800,765	1,764,023
울촌산단조성사업특별회계	58,800,765	1,764,023

제 2 조 세입 ·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 · 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65,613천원으로 한다.